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2018.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18년 2월 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수의매각 기준 명확화를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항 삭제(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삭제

나. 수의매각 기준 조항의 모호한 표현 수정(안 제40조제2호)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 ※ 쉽표(,) 추가

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명확화(안 제40조제4호)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2018-298(2018.3.12.~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3064호/2018.3.13)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3295호/2018.3.19)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17375호/2018.3.1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호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를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u> <u>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u> <u>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u> <u>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u> <u>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u> <u>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u> <u>「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u> <u>한다.</u></p>	<p><삭 제></p>
<p><u>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u> <u>· 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u> <u>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u> <u>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u> <u>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u> <u>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u> <u>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u> <u>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u> <u>각 호와 같다.</u></p> <p>1.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u> <u>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u> <u>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u> <u>은 공유재산</u></p> <p>2.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u> <u>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u></p>	<p><삭 제></p>

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
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
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
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
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유재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삭 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
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
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
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
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
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
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
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
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
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
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
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
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
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
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
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

②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
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

3.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2. -----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3. (현행과 같음)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하로서 <u>2012년 12월 31일</u> 이전부터 <u>군</u>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p> <p>가.·나. (생략)</p> <p>5. (생략)</p>	<p>4. ----- ----- <u>2012년 12월 31일</u>(「<u>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정균
연락처	(033) 330 - 2270